옥 천 군

선람	기관의 장

군 보

http://www.oc.go.kr

제1293호 2023. 1. 25.(수)

【공 고】

○옥천군 공고 제2023-120호 옥천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...1

회람									

발행: 옥천군 편집: 기획감사실(☎730-3063)

옥천군 공고 제2023-120호

옥천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옥천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」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1월 25일

옥 천 군 수

1. 자치법규명 : 옥천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2. 개정이유

○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여 옥천군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자립적 발전역량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함

○ 군 균형발전심의위원회의 구성을 변경하고 읍·면 균형발전추진위원회에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제고하기 위함

3. 주요골자

○ 목적, 정의 및 계획수립(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)

○ 균형발전 사업의 추진 및 대상지역 선정 등(안 제4조 및 제5조)

○ 균형발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(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)

○ 읍·면 균형발전추진위원회의 설치(안 제11조)

4. 의견제출

○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은 2023년 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(참조: 성장정책과장)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전화: 043-730-3692 팩스: 043-733-9057

우편 :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청 성장정책과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에는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 및 주소, 전화번호 등

붙임

○ 옥천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.

○ 의견서 양식 1부.

옥천군조례 제 호

옥천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옥천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옥천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옥천군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옥천군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지역균형발전”이란 옥천군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) 지역 간 발전의 기회균등을 부여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을 통하여 자립적 발전역량을 증진시키는 것을 말한다.
2. “균형발전사업”이란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쟁력 강화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말한다.

제3조(계획의 수립) ① 옥천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한다.

1. 지역 간 격차 실태분석
2.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의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

3. 지리적・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개발계획

4. 주거・교육・경제・기반시설 등 분야별 추진 전략

5.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② 군수는 기본계획에 대해 매년 지역균형발전 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・시행하여야 한다. 이 경우,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조치사항을 다음년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③ 군수는 시행계획 수립시 읍・면장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.

제4조(균형발전사업의 추진) 군수는 읍・면의 생활기반시설 확충 및 발전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지역특화사업

2. 지역개발사업

3. 주민숙원사업

4. 문화복지사업

5.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

제5조(선정 및 사업비)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업대상지역을 선정하고 읍・면별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다.

제6조(균형발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① 군수는 지역균형발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옥천군 균형발전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

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

2.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

3. 사업대상지역 및 균형발전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

4.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제7조(위원회의 구성 등)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,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당연직 위원은 균형발전 업무 담당 부서장 및 건설분야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.

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.

1. 옥천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

2. 지역주민 의견을 대표할 수 있고 덕망과 식견을 갖춘 사람

3. 지역개발 관련 분야에 대학교수, 박사 및 관련 자격을 소지한 사람

4. 지역개발 관련 분야에 근무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5. 기타 지역개발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제8조(위원의 임기)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한 차례만

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9조(위원장의 직무)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 다만,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0조(위원회의 회의 등)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한다.

1.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2.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지역균형발전 업무 담당이 수행한다.

④ 그 밖에 위원회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11조(읍·면 균형발전추진위원회의 설치) ① 읍·면장은 각 읍·면의 균형발전사업 발굴 및 주민 의견수렴을 위하여 읍·면 균형발전추진위원회(이하 “읍·면위원회”라 한다.)를 둔다. 다만, 읍·면장이 읍·면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다고 인정하

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.

② 읍·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규정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된 지역특화사업은 본 조례 제4조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.

관련법령 발췌

■ 지방자치법

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4.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·관리

가. 지역개발사업

나. 지방 토목·건설사업의 시행

다. 도시·군계획사업의 시행

라. 지방도(地方道), 시도(市道)·군도(郡道)·구도(區道)의 신설·개선·보수 및 유지

마.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

바. 농어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

사. 자연보호활동

아.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

자. 상수도·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

차. 소규모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

카. 도립공원, 광역시립공원, 군립공원, 시립공원 및 구립공원 등의 지정 및 관리

타.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, 녹지, 유원지 등과 그 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

파. 관광지, 관광단지 및 관광시설의 설치 및 관리

하.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

거. 주차장·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

너.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

더.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

제28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

제3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지역주도의 관련 시책을 수립·추진하여야 한다.

제10조(주민 생활기반 확충과 지역 발전역량 강화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주민 생활기반 확충과 지역 발전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.

1. 주민 생활기반 확충과 지역공동체 및 지역 간 연계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
2. 시·도 및 광역협력권의 경쟁력 향상에 관한 사항
3. 수도권발전에 따른 영향분석을 고려한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시책을 추진할 때 지역산업 육성, 인재 양성, 과학기술 진흥, 교통·물류시설 확충, 문화·관광 육성, 환경보전, 복지·보건의료의 확충 등 관련 부문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연계하고, 관련 부문에 대한 재정 지원 및 규제완화를 추진하여야 한다.

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○ 조　례　명 : 옥천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　　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조 례 안	의　　견